

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	<h1>보도자료</h1> <p>"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의 기관"</p>	 페이스북 @kcanews	
		 인스타그램 @kca.go.kr	
이 자료는 7월 12일(목)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[방송인터넷 매체는 7월 11일(수) 12시]			
배포일	2018년 7월 10일(화) (총 11쪽)	담당부서	안전감시국 식의약안전팀
		담당자	김제란 팀장 (043-880-5841) 최윤희 대리 (043-880-5844)

계장 및 젓갈, 위생·안전 관리 강화 필요

- 일부 제품에서 대장균, 노로바이러스 검출-

계장 및 젓갈은 특유의 감칠맛으로 일명 '밥도둑'이라 불리며 다양한 연령층에서 인기 반찬류로 소비되고 있으나, 해마다 섭취로 인한 구토·설사 등 위해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제품은 위생상태가 불량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이는 한국소비자원(원장 이희숙)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)*에 접수된 계장 및 젓갈 관련 위해사례 분석과 시중에 유통·판매 중인 31개 제품(계장 10개, 젓갈 21개)에 대한 위생·표시실태 조사 결과로 밝혀졌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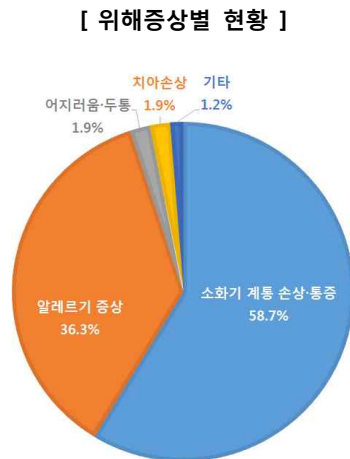
* 「소비자기본법」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,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·평가하는 시스템(CISS :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)

□ 섭취 후 복통·설사두드러기 등 위해사례 지속적으로 접수

최근 3년 6개월간('15년~'18년 6월) 한국 소비자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)에 접수된 계장 및 젓갈 관련 위해사례는 총 305건*으로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.

* 연도별 현황 : ('15년) 82건 → ('16년) 78건 → ('17년) 94건 → ('18년 6월 기준) 51건

위해증상이 확인되는 259건을 분석한 결과, 복통·구토·설사 등 '소화기 계통 손상 및 통증'이 152건(58.7%)으로 가장 많았고 두드러기·피부 발진·호흡곤란 등 '알레르기 증상'이 94건(36.3%), '어지러움·두통' 및 '치아손상' 각 5건(1.9%)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



□ 2개 제품에서 대장균, 1개 제품에서 노로바이러스 검출

계장 및 젓갈은 대부분 별도의 가열조리 없이 섭취하는 식품으로 제조·유통 단계에서 위해미생물에 오염될 경우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다. 따라서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의 식품유형에 따라 규정돼 있는 미생물 기준·규격을 준수하는 등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.

미생물(장염비브리오·대장균·노로바이러스) 오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, 31개 전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'장염비브리오'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오픈마켓 판매 2개 제품(간장계장 1개·굴젓 1개)에서 '대장균'이, 대형마트 판매 1개 제품(굴젓)에서 '노로바이러스'가 검출됐다.

위해미생물에 초기 오염된 제품은 보관 및 유통 조건에 따라 위해미생물이 급격하게 증가해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제조 과정의 위생관리 뿐만 아니라 이후 보관·유통·판매 과정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.

[장염비브리오균]

- 바닷물에서 서식하는 식중독균으로 오염된 음식 섭취 후 3~40시간 내(통상 10시간 이상) 구토, 복부 경련, 미열, 오한을 동반한 위장염과 설사(주로 물설사이며 경우에 따라 피가 섞인 설사) 증상이 나타남.

[대장균]

- 식중독균에 대한 검사를 대신하여 위생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세균임. 식품에서 확인되면 사람이나 동물의 분변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오염돼 비위생적으로 조리·관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대부분 비병원성 세균이나 일부 병원성 세균이 존재할 수 있음.

[노로바이러스]

- 구형으로 크기가 매우 작고 100개 미만의 노로바이러스 입자라도 감염이 가능하며 전염성이 강함. 주요 감염원은 오염된 지하수, 오염된 물로 세척한 식품, 오염된 패류 등이며 감염 시 설사, 복통, 구토, 메스꺼움, 두통, 발열, 근육통 등의 증세가 발생함.
- 노로바이러스는 유전자 염기서열에 따라 크게 7개의 유전자군(GI-GVII)으로 분류되며, 이 중 GI, GII 및 GIV형이 사람에게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. 그러나 현재 노로바이러스 검출 시험법으로 해당 바이러스가 실제로 인체에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단정할 수 없음.

* 참고 : 장염비브리오균에 의한 식중독 주의 당부(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, 2016.6.15), 대장균은 나쁜균! 좋은균?(식품의약품안전처, 2012.6.8), 노로바이러스 관리 매뉴얼(식품의약품안전처, 2012.2.) 등

□ 18개 제품(58.1%)은 표시기준 미준수

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에 따라 오픈마켓 판매 제품은 개별 제품에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하며, 대형마트 판매 제품은 매장 내 표지판 등에 표시사항을 기재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.

조사대상 31개 제품(오픈마켓 19개·대형마트 12개)에 대한 표시실태 조사 결과, 총 18개 제품(58.1%)이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.

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계장 및 젓갈 19개 중 15개 제품(78.9%)은 '알레르기 유발물질', '품목보고번호', '식품유형'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미기재했다.

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계장 및 젓갈 12개 중 3개 제품(25.0%)은 '식품유형' 또는 '식염함량'을 잘못 기재하거나 미기재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.

□ 계장 및 젓갈 제품의 위생점검 및 표시사항 관리·감독 강화 필요

한국소비자원은 계장 및 젓갈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위해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자에게 ▲제품 회수(판매중단) 및 위생관리 강화 ▲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고, 관련 업체들은 이를 수용하여 해당 제품을 회수(판매중단)하고 제조·유통단계의 위생 강화 및 표시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.

또한,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▲계장 및 젓갈 제품 제조·유통 단계의 위생점검 및 표시사항 관리·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.

소비자에게는 ▲구입 후 즉시 포장에 기재된 적정온도에 맞게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할 것 ▲유통기한 내 섭취할 것 ▲식중독 증상 발생 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음식물과 같은 증거물은 비닐봉투에 보관 후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.

< 붙임 >

1 관련 규정

□ 식품유형 및 미생물 기준·규격

○ (식품유형) 조사대상 계장 10개 제품(간장 6개·양념 4개)은 '절임식품*', 젓갈 21개 제품(굴 7개·명란 7개·오징어 7개)은 젓갈류 중 '양념젓갈**'에 해당함.

* 절임식품 : 주원료를 식염, 장류, 식초 등에 절이거나 이를 혼합하여 조미·가공한 것을 말함.

** 양념젓갈 : 젓갈에 고춧가루, 조미료 등을 가하여 양념한 것을 말함.

- 또한, 조사대상 31개 제품은 더 이상의 가공,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가공식품에도 해당돼 '장염비브리오' 기준·규격을 준수해야 함.

[식품유형별 미생물 규격¹⁾]

유형	절임식품	양념젓갈
기준 · 규격	□ 세균수 : n=5, c=0, m=0(멸균제품)	□ 대장균 : n=5, c=1, m=0, M=10
	□ 대장균 : n=5, c=1, m=0, M=10(살균제품)	
	□ 대장균 : n=5, c=1, m=0, M=10(비살균제품)	
	□ 장염비브리오 : n=5, c=0, m=0/25g (더 이상의 가공,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가공식품)	

□ 표시기준

○ 계장 및 젓갈을 제조·수입·판매하는 영업자는 제품에 제품명, 내용량, 원재료명 등을 한글로 표시해야 함.

- 다만 즉석판매제조·가공대상식품*의 경우, 표시사항을 진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때에는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.

※ 조사대상 31개 중 대형마트 판매 12개 제품(계장 4개, 젓갈 8개)은 즉석판매제조·가공대상 식품에 해당해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.

* 식품제조·가공업 영업자가 제조·가공한 식품 등을 즉석판매제조·가공업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품

1) 식품의약품안전처,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-18호)

n: 검사하기 위한 시료의 수

c: 최대허용시료수

m: 미생물 최소 허용 기준치, 결과가 m이하인 경우 적합

M: 미생물 최대허용한계치, 결과가 n수 중 하나라도 M을 초과한 경우 무조건 부적합



넓게 들겠습니다
바르게 알려드립니다

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
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www.kca.go.kr


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2. 위해사례 분석 결과

- **(연도별)** 최근 3년 6개월(15.1.1.~18.6.30.)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)에 접수된 '계장·젓갈' 관련 위해사례는 305건으로,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. 2018년 6월까지 접수 건수는 51건으로 전년 동기(40건) 대비 27.5% 증가함.

[연도별 현황]

					(단위 : 건)
연도	2015년	2016년	2017년	2018년 6월	합계
건수	82	78	94	51	305

* '수산물가공식품-젓갈류' 품목으로 조회한 결과임.

- **(품목별)** 위해사례 305건 중 '계장'은 185건(60.7%), '젓갈'은 120건(39.3%)이었음. 또한, 계장 중에서는 간장계장이 양념계장에 비해 위해사례가 많았고, 젓갈은 굴젓·오징어젓 등의 제품군이 다수를 차지했음.
- **(위해원인 및 증상)** 위해발생 원인으로는 '식품 섭취를 통한 위해 발생'이 250건(82.0%)으로 가장 많았음. 위해증상이 확인되는 259건을 분석한 결과, 설사·복통·구토 등 '소화기 계통 손상·통증'이 152건(58.7%)으로 다수를 차지했음.

[위해원인별 현황]

원인	건수(건)	비율(%)
식품 섭취를 통한 위해 발생	250	82.0
이물질*	39	12.8
부패·변질	16	5.2
합계	305	100.0

* 머리카락, 동물 털, 벌레, 유리조각 등

[위해증상별 현황]

증상	건수(건)	비율(%)
소화기 계통 손상·통증*	152	58.7
알레르기 증상**	94	36.3
어지러움·두통	5	1.9
치아손상	5	1.9
기타	3	1.2
합계	259***	100.0

* 설사, 복통, 구토, 식중독 등

** 알레르기, 두드러기, 가려움, 부종, 호흡곤란 등

*** 위해증상 확인이 가능한 259건 분석

□ 주요 위해사례

- '17년 7월 A씨는 간장계장 섭취 후 복통, 설사, 구토 증상이 발생해 병원 진료를 받음.
- '18년 5월 B씨는 어리굴젓 섭취 후 구토, 설사 등 증상이 발생함.
- '17년 5월 C씨는 간장계장 섭취 후 알레르기에 의한 호흡 곤란과 전신에 두드러기가 발생해 병원 진료를 받음.
- '17년 8월 D씨(여, 50대)는 명란젓 섭취 후 전신에 두드러기가 발생해 병원 진료를 받음.

3. 안전실태 조사 결과

안전실태 조사 개요

- **(조사대상)** 시중에 유통·판매 중인 계장 및 젓갈 31개 제품
 - 계장(10개) : 간장계장 6개, 양념계장 4개
 - 젓갈(21개) : 굴젓 7개, 명란젓 7개, 오징어젓 7개
- **(시험검사 항목)**

시험항목	시험방법
장염비브리오	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 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8-18호)
대장균	
노로바이러스*	별도 기준 및 규격 없음

* 주로 이매패류에서 검출됨에 따라 '굴젓(7개)'만 시험검사 진행함.

□ 장염비브리오

- 조사대상 31개 전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'장염비브리오'가 불검출됨.

□ 대장균

- 2개 제품(계장 1개, 젓갈 1개)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대장균이 검출됨.

※ 멸균·살균 과정을 거치지 않은 비살균 절임식품 및 젓갈류의 경우, 로트(LOT)번호가 동일한 5개 시료 중 1개라도 대장균이 10CFU/g(미생물 최대허용한계치)을 초과하여 검출되거나, 대장균이 검출된 시료가 2개 이상이면 부적합 제품에 해당됨.

[대장균 기준 초과 검출 제품]

(단위 : CFU/g)

구분	제품명	소분원/제조원	제조일자/유통기한	시험결과	기준
계장	해청 간장꽃계장	해청푸드	2018.5.29./2018.6.8.	5, 40, 4, 15, 6	n=5, c=1, m=0, M=10
젓갈	굴젓*	강경장수젓갈/두남식품	2018.7.31.	1, 0, 1, 0, 0	n=5, c=1, m=0, M=10

* 제조원에서 제조한 완제품을 소분원에서 나눠서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판매하는 제품임.

□ 노로바이러스

- 조사대상 굴젓 7개 중 1개 제품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됨.
- 유전자 염기서열분석 결과, 노로바이러스 GI 유전자군(Genogroup)*의 염기서열과 98%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남.

* 노로바이러스는 유전자 염기서열에 따라 크게 7개의 유전자군(GI-GVII)으로 분류되며, 이 중 GI, GII 및 GIV형이 사람에게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¹⁾. 그러나 현재 노로바이러스 검출 시험법으로 해당 바이러스가 실제로 인체에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단정할 수 없음.

[노로바이러스 검출 제품]

구분	제품명	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	유형	시험결과	유통기한
젓갈	어리굴젓	(주)동해식품	양념젓갈	검출	2018.9.25.

[장염비브리오균]

▪ 바닷물에서 서식하는 식중독균으로 오염된 음식 섭취 후 3~40시간 내(통상 10시간 이상) 구토, 복부 경련, 미열, 오한을 동반한 위장염과 설사(주로 물설사이며 경우에 따라 피가 섞인 설사) 증상이 나타남.

[대장균]

▪ 식중독균에 대한 검사를 대신하여 위생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세균임. 식품에서 확인 되면 사람이나 동물의 분변을 통해 직·간접적으로 오염돼 비위생적으로 조리·관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대부분 비병원성 세균이나 일부 병원성 세균이 존재할 수 있음.

[노로바이러스]

▪ 구형으로 크기가 매우 작고 100개 미만의 노로바이러스 입자로도 감염이 가능하며 전염성이 강함. 주요 감염원은 오염된 지하수, 오염된 물로 세척한 식품, 오염된 패류 등이며 감염 시 설사, 복통, 구토, 메스꺼움, 두통, 발열, 근육통 등의 증세가 발생함.

* 참고 : 장염비브리오균에 의한 식중독 주의 당부(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, 2016.6.15), 대장균은 나쁜균! 좋은균?(식품의약품안전처, 2012.6.8), 노로바이러스 관리 매뉴얼(식품의약품안전처, 2012.2.) 등

1) Vinje J., 2015. Advances in Laboratory Methods for Detection and Typing of Norovirus. *J Clin Microbiol.* 53(2), 373-381.

4 표시실태 조사 결과

표시실태 조사 개요

■ (적용기준)

구분	적용기준	내용
절임식품	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 25)절임식품	제품명, 식품유형, 업소명 및 소재지,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, 내용량, 원재료명, 용기·포장 재질, 품목보고번호, 보관방법, 주의사항(부정·불량식품신고표시, 알레르기 유발물질) 등
젓갈류	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 24)젓갈류	제품명, 식품유형, 업소명 및 소재지,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, 내용량, 원재료명, 용기·포장 재질, 품목보고번호, 보관방법, 주의사항(부정·불량식품신고표시, 알레르기 유발물질) 등

※ 대형마트 판매 제품은 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에 따라 매장 내 표시판 등에 표시사항을 기재할 경우 개별 제품의 표시사항을 생략할 수 있음.

□ (오픈마켓 판매) 개장

- 조사대상 6개 전 제품이 표시기준에 부적합했음. 특히 1개 제품은 표시사항(식품유형, 내용량, 품목보고번호, 부정·불량식품신고표시만 기재)을 개별 제품이 아닌 배송상자에만 표시했음.
- ‘알레르기유발물질’ 표시는 6개 전 제품, ‘식품유형’ 및 ‘품목보고번호’는 4개, ‘내용량’ 및 ‘부정·불량식품신고표시’는 3개, ‘용기·포장재질’은 2개, ‘보관방법’은 1개 제품 등이 잘못 기재하거나 미기재했음.

[표시기준 부적합 제품(오픈마켓 개장)]

순번	제품명	제조원	식품유형*	내용량	용기·포장 재질	품목보고번호	보관방법	부정·불량 식품신고	알레르기 유발물질
1	간장게장**	21세기 푸드	△	△	×	△	×	△	×
2	수라에찬 간장게장	수라에찬	△	○	○	○	○	×	△
3	해청 간장꽃게장	해청푸드	△	△	○	×	○	○	×
4	매운양념이 양념꽃게장	양념이 식품	○	○	○	○	○	○	×
5	양념꽃게장	교동푸드	△	×	×	×	○	○	×
6	양념꽃게장	김영미 게장	○	○	○	×	○	×	×

※ ‘○’: 표시 / ‘△’: 미흡 / ‘×’: 미표시

* 개장의 식품유형은 ‘절임식품’으로 기재해야하나, 일부 제품에 ‘절임류’, ‘수산물가공품’ 등으로 기재했음.

** 동 제품은 내용량, 품목보고번호, 부정·불량식품신고표시 등을 개별 제품이 아닌 배송상자에 스티커로 부착했음.

□ (오픈마켓 판매) 첫걸

- 조사대상 13개 중 9개 제품이 표시기준에 부적합했음. 특히, 1개 제품은 제품명을 제외한 다른 표시사항을 모두 기재하지 않았음.
- '알레르기 유발물질' 표시는 7개, '품목보고번호'는 6개, '식품유형'은 3개, '내용량' 및 '식염함량' 2개, '업소명 및 소재지'는 2개 제품 등이 잘못 기재하거나 미기재했음.

[표시기준 부적합 제품(오픈마켓 첫걸)]

순번	제품명	업체명 (판매/소분원)	식품유형	업소명 및 소재지	내용량	품목보고 번호	알레르기 유발물질	식염함량
1	양념젓갈	장금이젓갈	x	x	x	x	-	x
2	굴젓	강경장수젓갈	o	o	o	x	x	o
3	생굴젓	만남갓김치	o	o	o	o	x	o
4	어리굴젓	건영푸드	△	△	o	x	x	x
5	어리굴젓	해담음	o	o	o	x	x	o
6	굴젓	서천한산식품	o	o	△	x	o	o
7	웰빙일품 명란젓	서진식품	△	o	o	o	x	o
8	오징어젓 (선오)	토담	o	o	o	o	△	o
9	참푸드 오징어젓	참식품	o	o	o	x	x	o

※ o : 표시/△ : 미표시/x : 미표시/· : 해당사항 없음
 * 조사대상 제품의 식품유형은 '양념젓갈'로 기재해야하나 일부 제품은 '젓갈류', '양념젓갈류'로 기재했음.
 ** 동 제품군 제품명을 제외한 다른 표시사항을 모두 기재하지 않았음.
 *** 해당 제품은 관할 군청에 '18.6.30까지 기존 포장재 사용을 신고했으며, 7.1 이후 표시사항을 변경했다고 소명함.

□ (대형마트 판매) 계장

- 조사대상 4개 중 2개 제품이 '식품유형'을 잘못 기재했음.

[표시기준 부적합 제품(대형마트 계장)]

순번	제품명	즉석판매제조·가공업체	유형
1	간장계장	(주)해원에스디	△
2	양념계장	(주)해원에스디	△

* 계장의 식품유형은 '절임식품'으로 기재해야하나 '수산물가공업'으로 기재했음.

□ (대형마트 판매) 첫걸

- 조사대상 8개 중 1개 제품이 '식염함량'을 미기재했음.

[표시기준 부적합 제품(대형마트 첫걸)]

순번	제품명	즉석판매제조·가공업체	식염함량
1	굴젓	(주)동해식품	x

[별첨 1] 수산식품(계장·젓갈) 시험검사 결과표

구분	No.	제품명	제조원/판매원(소분원)	구입처	장염비브리오	대장균	노로바이러스
계장 (10개)	1	간장계장	21세기푸드	오픈마켓	불검출	기준적합	-
	2	수라예찬 간장계장	수라예찬	오픈마켓	불검출	기준적합	-
	3	해청간장꽃계장	해청푸드	오픈마켓	불검출	5, 40, 4, 15, 6	-
	4	매운양념이양념꽃계장	양념이식품	오픈마켓	불검출	기준적합	-
	5	양념꽃계장	교동푸드	오픈마켓	불검출	기준적합	-
	6	양념꽃계장	김영미계장	오픈마켓	불검출	기준적합	-
	7	간장계장	주식회사 녹선	대형마트(이마트 성수점)	불검출	기준적합	-
	8	간장계장	(주)해원에스디	대형마트(홈플러스 강서점)	불검출	기준적합	-
	9	알간장계장	(주)동해식품	대형마트(롯데마트 잠실점)	불검출	기준적합	-
	10	양념계장	(주)해원에스디	대형마트(홈플러스 강서점)	불검출	기준적합	-
젓갈 (21개)	11	굴젓	서천한산식품	오픈마켓	불검출	기준적합	불검출
	12	굴젓	두남식품 / 강경장수젓갈	오픈마켓	불검출	1, 0, 1, 0, 0	불검출
	13	생굴젓	만남갓김치	오픈마켓	불검출	기준적합	불검출
	14	어리굴젓	부일식품 / 건영푸드	오픈마켓	불검출	기준적합	불검출
	15	어리굴젓	정이푸드빌 / 해담음	오픈마켓	불검출	기준적합	불검출
	16	골드명란젓	선호식품	오픈마켓	불검출	기준적합	-
	17	명란젓갈	진성물산 / 장금이젓갈	오픈마켓	불검출	기준적합	-
	18	못난이명란	수영에프앤이주식회사 / 주식회사한울에프앤비	오픈마켓	불검출	기준적합	-
	19	웰빙일품명란젓	서진식품	오픈마켓	불검출	기준적합	-
	20	오징어젓	DANDONGGACRONGFOODSTUFF / (주)참푸드	오픈마켓	불검출	기준적합	-
	21	오징어젓	해그린 / 강경진주상회	오픈마켓	불검출	기준적합	-
	22	오징어젓(선오)	(주)그린민푸드 / 토담	오픈마켓	불검출	기준적합	-
	23	참푸드 오징어젓	참식품	오픈마켓	불검출	기준적합	-
	24	어리굴젓	(주)동해식품	대형마트(롯데마트 잠실점)	불검출	기준적합	검출
	25	어리굴젓	(주)동광푸드	대형마트(이마트 성수점)	불검출	기준적합	불검출
	26	감잎명란젓	(주)동광푸드	대형마트(이마트 성수점)	불검출	기준적합	-
	27	신명란젓	(주)미미식품유통	대형마트(홈플러스 강서점)	불검출	기준적합	-
	28	한입명란	(주)동해식품	대형마트(롯데마트 잠실점)	불검출	기준적합	-
	29	오징어젓	(주)미미식품유통	대형마트(홈플러스 강서점)	불검출	기준적합	-
	30	오징어젓	(주)동해식품	대형마트(롯데마트 잠실점)	불검출	기준적합	-
	31	웰빙오징어젓	(주)동광푸드	대형마트(이마트 성수점)	불검출	기준적합	-

* 제품 표시사항에 기재된 업체명임.

[별첨 2] 수산식품(게장·젓갈) 표시실태 결과표

구분	제품명	업체명(판매/소분원)	식품유형	업소명 및 소재지	유통기한/품질유지기한	내용량	원재료명	용기·포장재질	품목보고번호	보관방법	부정·불량식품 신고표시	알레르기 유발물질	식염함량
오픈마켓 게장 (6개)	간장게장*	21세기푸드	△	△	△	△	△	X	△	X	△	X	-
	수라에찬 간장게장	수라에찬	△	○	○	○	○	○	○	○	X	△	-
	해청간장꽃게장	해청푸드	△	○	○	△	○	○	X	○	○	X	-
	매운양념이양념꽃게장	양념이식품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X	-
	양념꽃게장	고동푸드	△	○	○	X	○	X	○	○	○	X	-
	양념꽃게장	김영미게장	○	○	○	○	○	○	X	○	X	X	-
대형마트 게장 (4개)	간장게장	주식회사 녹선	○	○	○	-	○	○	-	○	○	○	-
	간장게장	㈜웨인에스디	△	○	○	-	○	○	-	○	○	○	-
	알간장게장	㈜동해식품	○	○	○	-	○	○	-	○	○	○	-
	양념게장	㈜웨인에스디	△	○	○	-	○	○	-	○	○	○	-
오픈마켓 젓갈 (13개)	굴젓*	서천한산식품	○	○	○	△	○	○	X	○	○	○	○
	굴젓	강경창수젓갈	○	○	○	○	○	○	X	○	○	X	○
	생굴젓	만남김김치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X	○
	어리굴젓	건명푸드	△	△	○	○	○	○	X	○	○	X	X
	어리굴젓	해담음	○	○	○	○	○	○	X	○	○	X	○
	골드명란젓	선호식품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
	명란젓갈	장금이젓갈	X	X	X	X	X	X	X	X	X	-	X
	뭇난이명란	주식회사한올에프앤비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
	웰빙일품명란젓	서진식품	△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X	○
	오징어젓	㈜단지푸드	○	○	○	○	○	○	-	○	○	○	○
	오징어젓	강경진주상회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
	오징어젓(선오)	토담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△	○
	참푸드 오징어젓	참식품	○	○	○	○	○	○	X	○	○	X	○
대형마트 젓갈 (8개)	어리굴젓	㈜동해식품	○	○	○	-	○	○	-	○	○	○	X
	어리굴젓	㈜동광푸드	○	○	○	-	○	○	-	○	○	○	○
	감일명란젓	㈜동광푸드	○	○	○	-	○	○	-	○	○	○	○
	신명란젓	㈜미미식품유통	○	○	○	-	○	○	-	○	○	○	○
	한입명란	㈜동해식품	○	○	○	-	○	○	-	○	○	○	○
	오징어젓	㈜미미식품유통	○	○	○	-	○	○	-	○	○	○	○
	오징어젓	㈜동해식품	○	○	○	-	○	○	-	○	○	○	○
	웰빙오징어젓	㈜동광푸드	○	○	○	-	○	○	-	○	○	○	○

※ '○' : 표시/ '△' : 미흡/ 'x' : 미표시/ '-': 해당사항 없음.

* 해당 제품은 표시사항을 개별제품이 아닌 배송 포장 상자에 스티커로 부착함.

** 해당 제품은 관할 군청에 '18.6.30.까지 기존 포장재 사용을 신고했으며 7.1. 이후 표시사항을 변경했다고 소명함.